

【정책해설】

영재교육, 주요 정책방향 및 향후 과제

오 승 현 (교육인적자원부 조정2과장)
sohkikor@moe.go.kr

I. 영재교육 경과

을 3월1일부터 영재교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재교육이 공교육 차원에서 실시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간 영재교육에 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 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었다. 그렇지만 1996년부터 판별 도구 개발 및 영재교육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왔고, 최근 사회의 급격한 변동, 그에 따라 우수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작년부터 관계부처간 협의 및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영재교육 추진방향을 정립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인적자원개발회의(의장: 교육부총리)에서 영재교육 추진방향에 대한 정부차원의 의견을 모으는 한편, 몇 십 년 전부터 영재교육을 실시해온 미국을 각 시·도교육청 담당자들과 방문하여 수업현장을 살펴보고, 이스라엘 영재학교 교장을 면담하는 등으로 영재교육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을 4월10일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영재의 조기발굴 및 육성에 관한 2002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을 보고하고, 5월3일자로 부산 과학고를 영재학교로 지정하면서 영재교육은 교육정책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2002. 5. 9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방안을 보고하여 국가차원의 영재교육 비전제시를 위해 교육부, 과기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한 기획단 및 실무작업팀을 구성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여기서는 현재까지 정립된 국가차원의 영재교육 시행방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영재교육이 공교육 제도 안에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II. 영재교육 주요정책 방향

1. 영재교육의 목적

영재교육을 왜 국가 차원에서 실시해야 하는 가는 간단한 내용 같지만 실제로 교육정책에서 영재교육이 차지하는 자리와 영재교육대상자 및 영재교육 영역을 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먼저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은 국가발전, 그리고 학생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한 것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흔히들 첫 번째 목적인 '국가발전'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소수정예 고급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강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의 역량에 맞는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영재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형평성을 골간으로 하는 공교육 틀을 유지하면서 그 보완으로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월성을 가미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시작하고 있다.

위 두 가지 목적 중에 어느 측면에 더 중점을 두느냐는 실제로 혼재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명확히 선을 가르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는 영재교육에 관한 법으로 여러 나라에서 참고하고 있는 미국의 'Jacob & Javits Acts'에서 '영재는 국가의 미래와 안보, 번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국가의 자원'이라고 규정하면서 '미국이 번영하려면 모든 학생들은 그들의 잠재력을 개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진흥법'에서도 영재교육의 목적을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목적 중 어느 것에 우선 순위를 두고 영재교육 정책을 펼칠 것인가는 영재교육 형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앞으로 영재교육 전문가들이 연구 발전시켜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2. 영재의 정의

영재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자주 제기되는 질문은 '누가 영재냐'이다. 이 개념이 정리되어야 영재교육대상자가 나오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과 교재 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전체학생의 얼마가 영재나 또는 IQ 얼마 이상이 영재나 하는 등의 질문이 나오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영재의 정의는 바로 영재교육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어느 수준의 학생들이 영재다 라고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물론 각종 연구에서는 나름대로 영재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학술적인 측면에서 개념이지 실제적인 개념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즉, 영재의 정의는 영재교육 분야, 수용규모, 교육 정책적 목적 등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수준에서는 '일반학생을 상회하는 능력이 있는 학생 또는 잠재능력이 뛰어난 학생' 학생 등으로 정의하고, 그에 맞추어 각 교육청 또는 영재교육기관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영재교육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유로 영재교육진흥법에서는 영재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 정의하고 이중 '영재판별기준에 의하여 판별된 사람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연방정부 또는 주 단위의 법에서는 '높은 수행능력을 보이는 잠재적인 능력을 지니거나 나타내는 것으로 판별된 학생'을 영재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각 학교 교육 구의 교육위원회에서 만든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통상 주 마다 차이가 있는데 적게는 1%에서 많게는 13% 정도의 학생을 영재교육대상자로 보고 있으며, 미국 국립영재교육연구소에서는 15%의 학생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교육청별로 영재교육대상자가 전체학생의 얼마라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그러한 기준 없이 각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을 취합해 보니 전체학생의 얼마에 해당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게 된 것이다. 참고로 이스라엘은 3%, 싱가포르의 경우 공식적으로 영재교육대상자의 비율을 정의하지 않고 있는데 그 비율은 약 1% 정도로, 대만은 약 0.7% 정도로 알려져 있다.

영재의 정의를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각 영재교육기관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영재의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극소수 영재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교에 다니는 영재는 전체 학생의 0.01%(1만명당 1명) 이하일 수도 있을 것이며, 반면에 각급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영재학급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영재를 대상으로 하며 반면에 그 수는 훨씬 많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영재의 범위와 관련해서 유념해야 할 기준은 ‘포함의 원칙’과 ‘제한의 원칙’이다. 포함의 원칙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영재의 범위를 폭넓게 보고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해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안을 두게 된다. 따라서 포함의 원칙에서는 선발보다 교육내용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제한의 원칙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영재의 정의를 아주 엄격하게 정의해 영재라고 여겨지는 학생들만 선발하는데 주안을 두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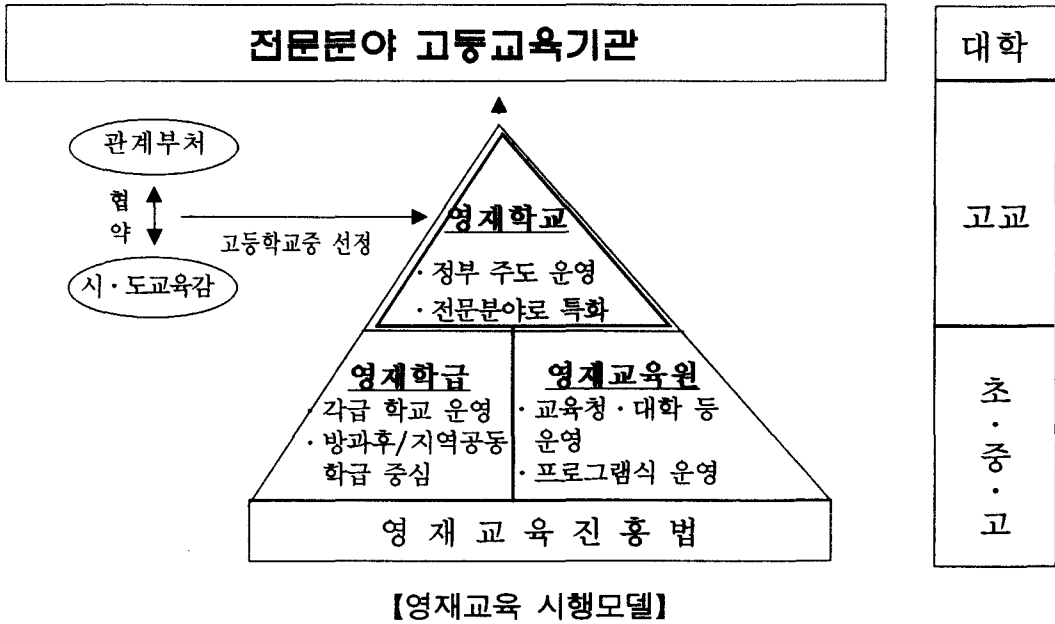
위 두 가지 원칙은 결국 그 나라의 여건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따라서 어느 것이 더 나은 방안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참고로 우리의 경우에는 영재교육 시행 초기라는 점과 사회적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엄격한 선발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앞서 말했듯이 극소수 영재를 대상으로 하는 영재학교는 ‘제한의 원칙’에 가깝고 보다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식 영재교육들은 ‘포함의 원칙’에 가깝게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 국가 또는 교육청에서 일정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판별절차를 거쳐 영재교육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각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게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

우리의 경우 후자를 택하고 있는데, 이는 영재교육 시행초기로 각종 영재교육 인프라가 아직 충분치 않다는 점, 각 영재교육기관마다 대상으로 하는 영재학생의 수준 및 교육영역이 다르다는 점, 학생선발은 각 기관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영재교육 효과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는 점,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국가나 교육감이 영재학생을 선정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이 너무나 크다는 점등을 고려한 것이다.

3. 영재교육기관

현행법상 영재교육기관은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대상 학생수의 수나 교육기관의 수 등으로 볼 때 이들은 피라미드형 형태로 서로 연계된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영재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들도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중국적으로는 하단의 영재교육기관(영재학급/영재교육원)에 있는 학생들 중 영재성이 뛰어난 학생들이 영재학교로 진학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대학과 연계는 해당분야 학과나 학부에 특별전형 형태 또는 관련 전문분야 대학과 영재학교와 협약에 의해 일정 수준 이상인 학생들이 진학하는 형태로 운영되게 된다.



【영재교육 시행모델】

가. 영재학교

영재학교는 전문분야 영재를 대상으로 전일제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장 뛰어난 잠재능력을 지닌 영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고등학교 급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경우에는 별도 전일제 영재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에 부작용을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 그리고 외국의 경우도 그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렇지만 영재를 조기에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중학교 1,2학년 재학생도 고등학교급 영재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우 중학교를 조기 졸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실제로 중1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영재학교가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영재학교는 전문분야 영재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분야 인력양성과 관련된 정부부처에서 인적·물적 지원 및 졸업생 진로지도에 일정 역할을 맡아 주어야 교육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영재학교는 정부부처와 시·도교육청간 협약을 맺어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서로 협력하여 전문분야 영재를 육성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과학기술부가 영재학교 운영 지원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고, 과학고를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부산과학고를 영재학교 전환대상학교로 정하고 부산광역시교육감과 협약을 맺어 영재학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다. 부산과학고는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2년 5월 3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영재학교 지정을 받았으며, 올해 학생을 모집하여 2003년 3월부터 영재학교로 운영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정부의 방침은 부산과학고를 영재학교로 시범 운영하면서 그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나. 영재학급

영재학급은 각급 학교에서 운영되는 영재반을 말한다. 다만 우열반 형태의 상설형 영재학급 (Self-Contained Classrooms) 운영은 여러 가지 폐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는 특별활동, 자율활동, 주말 또는 방학을 이용한 형태의 영재학급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 영재교육원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센터의 법적 용어로 보면 된다. 교육청(지역교육청 포함),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공익법인 등에서 설치 운영이 가능하다. 영재교육원은 성격상 정규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방과후, 주말 또는 방학을 이용하게 된다. 특히, 영재교육원의 경우 학교 수업시간 중에도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당해 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Pull-Outs) 형태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은 1개 기관이 중심이 되어 운영될 수 있지만 영재교육 대상 모집단의 수를 넓히고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에서 하나의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인근학교 영재학생까지 교육대상자로 하는 '학교연합 지역공동 영재학급', 그리고 영재교육원의 경우에는 교육청과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들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은 수학·과학·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흔히들 프로그램식 영재교육이라고 불리고 있다.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에서 학습한 내용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학생 진로지도에 활용하게 된다.

그리고 프로그램식 영재교육도 올해부터는 제도화됨에 따라 일정 기준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해당 기관의 신청과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게 된다.

4.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은 각 영재교육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성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각 영재교육기관이 실질적인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주체가 되어 각 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목적, 그 수준 및 방법을 설정한 후 영재를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시행령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각 영재교육기관에서는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전형공고를 하고,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학중인 학교장, 지도교사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영재교육 관련기관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영재교육기관에 제출한다. 이어 각 영재교육기관별로 영재교육대상자선정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재교육대상자 선정방법을 정하고 소정의 전형절차를 거쳐 영재교육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선발된 학생들을 교육감에게 추천하고, 교육감은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는 현행법에서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도록 규정함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각 영재교육기관에서 직접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을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각 영재교육기관장이 직접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면 절차의 간소화는 물론 각 교육기관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어 영재교육이 그 취지를 달성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에서는 '잠재력 중심'이라는 원칙을 유지하여야 한다. 학과성적 중심으로 영재를 선발한다면 예전의 '특수반' 또는 '우열반'을 영재교육이란 이름을 빌어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영재교육 취지에도 맞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선발방법은 어느 수준의 영재를 교육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느냐와 관계되어 있어 영재학교, 영재학급, 그리고 영재교육원에서의 선발방법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판별도구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판별도구를 이용하거나, 이를

참고삼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용으로 판별도구를 개발하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단계 영재선발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천, 표준화된 검사 실시, 실험·실습, 또는 관찰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 이 역시 각 영재교육기관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영재교육대상자의 수준에 맞춰서 결정하면 된다.

5. 영재교육 담당교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영재교육에서 교사가 차지하고 있는 몫은 아주 크다. 우선은 영재학생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영재교육이 선행학습 등 교과학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창의성과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교원의 역할을 보아야 한다. 아울러 특정교과에 대한 전문성은 각 영재교육기관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준과 특정교과에 대한 전문성도 요구되고 있다.

영재교육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시간 연수를 받는 것을 필수요건으로 했는데 영재학교 교원은 120시간, 영재학급 교원은 60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학교 밖에서 운영되는 영재교육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직무연수의 시기 및 방법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운영성격이 유사한 영재학급의 경우를 준용하고자 한다.

교육부에서는 2001년부터 영재교육 담당교원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현재 초·중등교원 및 전문직 등 260명이 연수를 이수 하였는데, 이는 각 시·도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영재교육기관 운영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아주 부족한 규모이다. 따라서 이제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체 연수기관 또는 인근 대학, 한국교육개발원 등과 협의하여 담당교원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2005년까지 약 6천명의 영재교육 연수를 받은 교원을 배출할 계획인데 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영재교육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경험과 노력이 축적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 담당교사는 우수한 교사를 배치토록 하고, 전보제한 규정에 관계없이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6. 영재 교육과정

사실, 공교육 테두리에서 각 영재들의 눈 높이에 맞는 개별적 교육을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교육과정 운영측면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영재학교, 영재학급운영은 학교장의 재량을 최대한 부여하여 그 어떠한 학교보다도 학교 운영에서 관련 규정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에서 규정하였다.

특히 영재학교는 교육과정, 교과서, 학년제, 학기제, 학급 편성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어 국내 학교 중 가장 자율성이 높은 학교라 할 수 있다.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은 비정규 교육과정이므로 학사운영에 관한 초·중등교육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재교육진흥법령에 규정된 학생선발, 지정기준 등 일반적이 사항 외에는 각 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 또는 다른 영재교육기관에 위탁교육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가 영재교육기관에 파견, 겸임 등의 형태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해 영재특성에 맞는 교육이 되도록 했다.

III. 향후과제

1.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

그동안 영재교육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법령을 만들고, 시행체제를 정립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렇지만 이제는 각 프로그램들이 가동되는 단계에 있는 만큼 영재교육에 대한 철학, 비전, 그리고 국가수준의 영재교육 기준을 만들며, 이를 어떻게 진흥할까 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영재교육 영역 및 대상자를 좀더 구체화하고 영재학교 운영의 틀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판별도구, 교원연수,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에서도 계속해서 확충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영재교육에 대한 철학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 안에 관련부처 및 전문가와 공동작업으로 향후 영재교육 정책방향을 담은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재교육에 관한 각계의 합의가 더욱 공고해지고, 질 높은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2. 영재교육진흥법 정비

현행 영재교육진흥법은 일부 조항에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재의 원입법으로 국회에 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아울러 이번에 시행령을 만들면서 입법 전문가들로부터 법체계 및 형식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다. 즉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영재교육 시행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법에 기본적인 내용만 언급하려 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영재교육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면 이러한 조항들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리라 본다. 특히 앞으로 각 현장에서 실시되는 영재교육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의 특성을 보다 구체화하면서 영재교육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 자율에 맡겨야 할 부분,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영재교육진흥법 정비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3. 영재교육기관의 우수사례 확산

올 하반기부터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한 각종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선을 보이게 된다. 이들 프로그램은 이전까지 각 시·도교육청 및 대학 등에서 영재교육진흥법과 관계없이 실시해 왔던 프로그램보다 틀이 잡힌 것이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영재교육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들 프로그램 중 우수한 것을 선정하여 영재교육 프로그램 수범사례로 육성하게 보급하여 전체적인 영재교육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떤 기준과 방법에 의해 평가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4. 부작용 예방 위한 노력

영재교육에 대한 부작용 우려도 만만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자녀를 영재로 만들기 위해 사교육기관에서 어렸을 때부터 영재학습을 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지적에 의하면 이러한 영재교육은 기능적 영재교육이라고 해서 영재 판별도구를 사전에 외우게 하거나 아니며 영재란 이름으로 실시하는 선행학습으로 학생들의 영재성 발달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나마 갖고 있는 학생들의 창의성마저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고 한다. 이러한 폐해는 판별절차를 잘 고안해 그러한 학생들이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되지 않도록 하면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각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할 때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히 영재교육 전문가들의 협조가 요청된다. 전문적인 분석결과를 널리 알리는 한편, 각 영재교육기관 관계자들에게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영재교육대상자 선발과 프로그램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은 아무래도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